

【문 7】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지만,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도급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② 상법 제69조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수량부족이나 물건의 하자 외에 매매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 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6개월 후라도 하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②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확인소송이므로 소송상의 항변으로써도 무효·부존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 9】 물건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 ④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문10】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③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문11】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흠이 있어도 1인 주주가 참여하여 결의하면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어도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회사지배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가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자회사 간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문12】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 ②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④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문13】 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문14】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①번 지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게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서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 ③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청산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3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에 따른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되고, 이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같다.

【문16】 상법 제467조의2에 규정된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가 주주 아닌 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의 이익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이면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 ② 회사가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회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주주는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의 이사회 감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이사회 감사는 물론 이익을 수수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17】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②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 ④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상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문18】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②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19】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나 사외이사도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 ④ 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20】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 ③ 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 측에서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문21】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 ③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④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문22】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③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주를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 ④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23】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자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만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문24】 주식회사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乙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에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에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그 대표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③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물론이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도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25】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 나. 상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때 보통결의 요건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족수를 둘 수 있고, 특별결의 요건의 한도 내에서 의결정족수를 가증할 수 있다.
- 라.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